【광주광역시 북구축구협회 선관위공고 제2020-1호】

공　　고

광주광역시북구축구협회 회장선거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장 선거일

가. 일시 : 2021년 01월 14일(목요일) 09:00 ~ 18:00

나. 장소 : 북구축구협회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496-5 주차장2층)

2. 회장 후보자 등록

가. 기간 : 2021년 1월 4일 ~ 1월 6일 (3일간)

나. 장소 : 북구축구협회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496-5 주차장2층)

다. 연락처 : 010-2605-5222 (김광수 선거관리위원)

라. 기탁금 납부(후보자 명의로 후보 등록 접수기간 내에 납부)

- 납부기간 : 2021년 1월 4일 ~ 1월 6일 (3일간)
- 납부계좌 : (농협), (351-0958-3346-63), (광주북구축구협회)
- 납부금액 : 금삼백만원

3. 회장 후보자 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2호서식)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법원발행)

라.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별지3호서식) 1부.(체육단체 경력자에 한함.)

마. 범죄사실 부존재확인 서약서 1부.

바.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사임 증명서(협회 또는 연맹의 임원이었던 자에 한함) 1부.

아. 이력서(약력서) 1부.

자. 개인정보동의서 1부.

4. 선거운동기간

가. 일시 : 2021년 1월 7일 ~ 2021년 1월 13일 (7일간)

5.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가. 기간 : 2020년 1월 4일 ~ 1월 6일(3일간)

나. 장소 : 북구축구협회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496-5 주차장2층)

6. 기타사항

가. 회장 후보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회장 후보자가 1회이상 광주광역시북구축구협회 (타 구종목단체포함) 회장을 연임한 경우,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에 임원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적용여부 심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10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광주광역시북구족구협회에 귀속합니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당선인의 기탁금은 협회로 귀속되어 1년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라.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정관(규약)제25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의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광주광역시북구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공고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협회(연맹 또는 회)규약 제2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9. 7. 17.>
3.~7. *<삭제>*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구 종목 단체에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19. 7. 17.>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19. 7. 17.>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9. 7. 17.>
11.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개정 20.12.15.>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구체육회 이사회가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개정 19. 2. 25.> <개정 20.12.15.>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2020년 12월 31일

광주광역시북구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광주광역시북구축구협회 선관위공고 제 2020-2호]

공 고

광주광역시 북구 축구 협회 회장 후보자 등록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등록기간 : 2021 년 01 월 04 일(월요일) 09 시부터

2021 년 01 월 06 일(수요일) 18 시까지

○등록장소 : 광주북구축구 협회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496-5 주차장2층)

○회장선거일 : 2021년 01월 14일

○기타문의: 010-2605-5222 (김광수 선거관리위원)

2020 년 12 월 31 일

광주광역시북구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